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인묵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64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4일

발 의 자 : 채인묵 의원 (1명)

찬 성 자 : 김인호, 노식래, 송아량,
이은주, 김태호, 정진철,
정진술, 조상호, 이승미
의원 (9명)

1. 제안 이유

- 현행 조례 제15조제7항은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검토하고 확인하는 ‘사업비 정산의 검사’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계 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불필요하게 업무수행 전문가의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이 가중되었음.
- 한편, 현행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대한 검사와 의견서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검사’에 대해서도 위 법령과 동일하게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의 외부전문가가 결산서의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적합한 확인 및 검증 절차를 두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 나.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에 대해서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5조제7항·제8항)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비 결산서 검사”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제7항 전단 중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비 결산 검사인”이라 한다)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 4에 따라 등록된 세무법인
2.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

제15조제8항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독립된 사업비 결산 검사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현행과 동일)</p> <p>6. <u>“사업비 결산서 검사”란 민간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⑥ (생략)</p> <p>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u>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u>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u>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u>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⑥ (현행과 동일)</p> <p>⑦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비 결산 검사인”이라 한다)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u>----- -----, <u>사업비 결산서 검사</u>----- -----.</p> <p>1. <u>「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된 세무법인</u></p> <p>2. <u>「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u></p>

<p>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⑨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u></p> <p>⑧ ----- 독립된 사업비 결산 감사인 ----- -----.</p> <p>⑨ (현행과 동일)</p>
---	--